

제25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

2015. 9. 2.

임실군의회 의장

1. 개정이유

『임실군 주차장 조례』에 대하여 미비한 부분을 정비·보완 및 민선6기 전북발전 5대 핵심과제의 하나인 행복한 복지환경조성을 위한 중심사업인 여성친화 3대 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여성 우선 주차장을 확대함에 따라 여성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여성 운전자들의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차요금에 대한 감면 조항 (안 제3조제4항 신설)
- 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기준 조항 (안 제10조의2 신설)
 -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여성 우선 주차구획을 10퍼센트 이상 설치 의무화

3. 참고자료

-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협의 등 :
 - 1) 부패영향평가/규제심사 : 원안동의
 -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15.7.7. ~ '15.7.27.)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관련규정 발췌문 : 붙임

임실군 조례 제 호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로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 요금을 50퍼센트 이상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운전하는 차량
2. 『고엽제후유의 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 증 환자가 운전하는 차량
3.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운전 또는 동승한 차량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형자동차
5. 『대기환경법』 제58조 제10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시장 상인 및 고객의 차량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관리 수탁자가 공영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여 운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 ① 군수는 여성의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면수 30면이상 공영주차장의 경우

10퍼센트 이상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한다.

② 군수는 부설 주차장을 신규 설치하거나 주차 면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여성우선 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성과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된 위치에 설치한다.

④ 여성우선 주차구획은 분홍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탁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 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가.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는 1대 나.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기숙사를 제외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가. 골프장 1홀당 10대 나.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다.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 라.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생략)</p> <p>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u><신 설></u></p>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p> <p>②-----<u>제2조제22호</u>-----</p> <p>-----</p> <p>---</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군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50퍼센트 이상 감면할 수 있다.</u></p> <p>1.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운전하는 차량</p> <p>2. 『고엽제후유의 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 증 환자가 운전하는 차량</p> <p>3.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운전 또는 동승한 차량</p> <p>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배기량 1000CC</p>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② (생략)

<신설>

<신설>

미만의 경형자동차

5. 『대기환경법』 제58조 제10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시장 상인 및 고객의 차량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관리 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여 운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

구획 설치 기준 등) ① 군수는 여성의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면수 30면 이상 공영주차장의 경우 10퍼센트 이상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한다.

② 군수는 부설 주차장을 신규 설치하거나 주차 면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여성우선 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성과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된 위치에 설치한다.

④ 여성우선 주차구획은 분홍색으로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4]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관련)
<개정 2006.08.07 조례 제1787호>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 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15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가. 시설면적 50㎡초과 150㎡ 이하는 1대 나. 시설면적 150㎡초과의 경우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중 오피스텔(기숙사를 제외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	가. 골프장 1홀당 10대

[별표4]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관련)
<개정 2014.12.30.>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현행과 같음)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현행과 같음)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현행과 같음)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현행과 같음)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기숙사를 제외한다)	(현행과 같음)

외수영장, 관람장	나.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다.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라.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
7.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현행과 같음)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인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지역경제과장 한 성 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전북임실039		
정책명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북도 임실군	
	부서명	지역경제과	
	담당자명	강경수	전화번호 063-640-2575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7월 15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지역경제과)	가. 주차요금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 (안 제3조제4항) 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기준 조항 신설 (안 제10조의2) -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여성 우선 주차구획을 10퍼센트 이상 설치 의무화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안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07월 17일 주민복지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박경숙/063-640-2123)			
지역경제과장 귀하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생략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생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제15조(관리방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